스위스 거주: 두 가지 과세 제도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추크의 일반 과세

추크 칸톤에 거주지를 두고 일반 방식으로 과세되는 창업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연방·칸톤·기초자치단체 소득세를, 전 세계 순재산에 대해 칸톤 및 기초자치단체 부유세를 납부합니다. 추크의 합산 최고 소득세율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약 22~23% 수준으로, 고소득자 기준 스위스 칸톤 중 가장 낮습니다. 부유세는 공제액을 모두 소진한 후 순재산의 약 0.1~0.3% 수준입니다.[1]

가장 큰 매력은 연방직접세법(Direct Federal Tax Act, DFTA; DBG) 제16조 제3항으로, 사적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소득세에서 면제합니다.[2] 칸톤 조세조화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면제는 세 단계 모두에 적용됩니다.[3] 따라서 토큰을 사적 재산으로 보유하다가 락업 이후 매도하는 창업자는 가치 상승분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대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부유세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포지션의 시장가치에 부과되므로, 유동성이 낮은 대규모 창업자 배정분의 경우 토큰을 한 개도 팔기 전에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당국이 창업자를 영업적 거래자로 분류하면 면제를 잃게 되며, 이 경우 이익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4]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영업적 거래자 위험은 창업자들이 흔히 잘못 판단하므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람 제36호의 안전항 기준(보유기간 최소 6개월, 거래량이 기초 포트폴리오의 5배 미만, 이익이 순소득의 절반 미만, 차입 자금 조달 없음, 헤지 목적 외 파생상품 없음)은 주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자기 토큰의 시장을 조성하거나, 탈중앙화 풀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트레저리를 매주 리밸런싱하는 창업자는 여러 기준을 한꺼번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분류는 과세기간마다 이루어지므로, 조용한 한 해가 활발했던 한 해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특유의 지표는 제G편 제II장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구조 설계상 요점은, 이주 후 활발한 거래자가 될 생각인 창업자는 그 전제를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면제 혜택이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출 기준 과세

연방직접세법 제14조는 자연인이 실제 소득과 재산 대신 연간 생활비를 기준으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스위스 시민이 아닐 것, 처음으로 또는 최소 10년간의 부재 후에 스위스 거주자가 될 것, 스위스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5]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네 가지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실제 전세계 생활비, 물가 연동 후 현재 연방세 기준 429,100 스위스프랑인 법정 최저액, 주택 연간 임대료 또는 임대가치의 7배, 그리고 스위스 원천소득과 조약상 경감을 받는 해외소득을 합산하는 통제계산의 결과입니다.[6] 이 제도를 제공하는 칸톤은 자체 최저액을 정하며, 이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추크는 이 제도를 제공하지만, 취리히는 2009년 주민투표로 이를 폐지하였고 다른 여러 칸톤도 취리히를 따랐습니다.[7]

가상자산 창업자에게 이 제도는 서류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까다롭습니다. 매력은 세금이 지출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토큰 포지션의 규모와 해외에서 실현한 이익이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추크 세율로 50만~70만 스위스프랑의 과세표준이면, 창업자가 그해 토큰을 200만 스위스프랑어치 팔든 5,000만 스위스프랑어치 팔든 연간 세액은 수십만 스위스프랑대 초반에 그칩니다. 까다로운 점은 스위스 내 영리활동 금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로토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콜 작업을 하거나, 추크 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바르(Baar)의 사무실에서 추크 영업회사를 경영하는 창업자는 스위스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정액과세 제도를 상실합니다.[8] 자신의 사적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것은 근로입니다.

이 긴장에 대한 통상적인 해법은 세 가지입니다. 일부 창업자는 일반 과세를 받아들이고 사적 자본이득 면제에 의존합니다. 소득의 거의 전부가 장래 토큰 가치 상승인 창업자에게는 어차피 이쪽이 더 나은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창업자는 정액과세를 택하고 스위스 내 활동을 토큰 보유자라는 수동적 역할로 한정하며, 영업회사는 싱가포르나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운영합니다. 또 일부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설계합니다. 성공적인 엑시트 후 창업자의 역할이 이미 수동적으로 바뀐 처음 몇 년은 정액과세를 택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일반 과세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통하지 않는 방법은 정액과세를 택하고 조용히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추크 과세당국은 이 업계를 잘 알고,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포럼을 읽으며, 재단 멀티시그의 서명자가 누구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고객 질문

"저는 독일 국적자이고 스위스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제 토큰 배정분은 약 3,000만 스위스프랑 가치이며 3년에 걸쳐 베스팅됩니다. 추크의 정액과세를 택하면서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정액과세는 이사회 직위와 트레저리 서명을 포함하여 스위스 땅에서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만 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운영 역할을 맡을 계획이라면 일반 과세를 전제로 계획하고, 사적 재산 지위를 뒷받침할 근거를 쌓아야 합니다. 배정분은 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지갑에 보유하고, 긴 간격을 두고 몇 차례의 대규모 분할로 매도하며, 포지션을 담보로 차입하지 말고, 시장조성은 회사를 통해 하십시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베스팅 분할분은 지급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시점에 여전히 근로소득일 수 있지만(제G편 제IV장 참조),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비과세 사적 자본이득입니다. 엑시트 후 프로젝트와의 유일한 연결이 보유 토큰뿐이 되면 정액과세는 다시 검토할 만한 선택지가 됩니다.

주

1. 추크 칸톤, Steuergesetz (BGS 632.1), § 35 이하 및 § 42 이하; 추크 칸톤 과세당국이 공표한 2026 과세기간 세율. 세율표는 제G편 제I장 참조. ↩
2. Federal Act on Direct Federal Taxation of 14 December 1990 (DFTA; DBG), SR 642.11, 제16조 제3항: "Die Kapitalgewinne aus der Veräusserung von Privatvermögen sind steuerfrei."(사적 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비과세한다.) ↩
3. Federal Act on the Harmonisation of Direct Taxation at Cantonal and Communal Levels of 14 December 1990 (THA; StHG), SR 642.14, 제7조 제4항 제b호. ↩
4. 스위스 연방세무청, 2012년 7월 27일자 회람 제36호 "Gewerbsmässiger Wertschriftenhandel"; 연방세무청 실무문서 "Kryptowährungen und Initial Coin/Token Offerings (ICOs/ITOs) als Gegenstand der Vermögens-, Einkommens- und Gewinnsteuer, der Verrechnungssteuer und der Stempelabgaben", 최신판. 안전항 기준은 제G편 제II장에서 상세히 분석한다. ↩
5. 연방직접세법, SR 642.11,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스위스 연방세무청, 2018년 7월 24일자 회람 제44호 "Besteuerung nach dem Aufwand bei der direkten Bundessteuer", 제2절 및 제3절. ↩
6. 연방직접세법, SR 642.11, 제14조 제3항 제a호부터 제d호(2025년 1월 1일 현재: 최저 과세표준 429,100 스위스프랑); 연방세무청 2018년 7월 24일자 회람 제44호, 제3절.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7. 조세조화법(THA), SR 642.14, 제6조; 추크 칸톤, Steuergesetz (BGS 632.1), § 13. 이 제도를 유지하는 칸톤과 그 최저 과세표준은 제G편 제VI장에 정리되어 있다. ↩

8. 연방세무청 2018년 7월 24일자 회람 제44호, 제2.3절(스위스에서 행사되는 이사회 직무를 포함하여 스위스 내의 모든 영리활동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